

#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물자와 인권책무성:

미얀마와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 현 경\*\*

## 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수출한 방위산업물품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분쟁 주도 집단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책무성 강화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출물품이 반인권적으로 오용된 경험이 있는 미얀마와 태국을 각각 방위산업과 치안물품에 관련한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미얀마 군함 수출 사례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수입국의 군 관련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군용물자를 포함하는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의 목적 외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와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인권 조항들을 상위법인 방위사업법에 반영하는 허가 및 심사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위험 거래자를 관리하기 위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태국의 사례는 살수차가 유독물질을 분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341). 본 연구의 일부는 2020년 이재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고서 “이웃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무성 강화 방안 연구” 중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를 제안해준 사단법인 아디와 김기남 변호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mhdumo@gmail.com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이 반인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총칙 법제를 개선하여 관련 품목에 대한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기구의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수입국 법제 개선을 위해 법제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협력적 접근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K-방산의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이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K-방산, 미얀마, 태국, 전략물자, 방위산업, 이중용도, 책무성

---

## I. ‘K-방산’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한국의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주요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을 기준으로 세계 10위<sup>1)</sup>에 이르는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할 만큼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로 올라서고 있으며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SIPRI 2025; Defense News Army 2024/02/12; Park 2024).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의 K-방산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방비 지출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2)</sup>

---

1)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순.

2)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국방비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는 346억 6천만 달러였던 동남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2024년에는 548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남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SIPRI n.d.).

2025년 새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의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K-방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방산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한국의 방산물자가 목적 외로 전용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들이다. 본 연구는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한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와 치안물품이 사용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2021년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군경의 폭력이 발생했고, 시위 현장에서는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미얀마의 시위현장에서 한국 기업에서 수출한 섬광폭음탄과 최루가스총이 사용되고 있고(전광준 2021/03/12),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미얀마 군복이 생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나현필 2021/06/09), 태국 시위 현장에서는 실제로 한국 기업이 수출한 살수차가 동원되면서 시위대의 피켓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No Gino”)이 이루어진 것이다(현시내 2021/02/27). 한국 기업에서 대민지원용으로 미얀마에 수출한 선박이 군함으로 전용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다(MBC 2021/04/13).

한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초기부터 군용물자 수출 중단, 개발 원조 사업 재검토 조치를 발표하고, 최근 인도적 접근 허용, 평화적 사태 해결, 건설적 대화 개시 촉구의 내용을 담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이제훈 2022/02/01)하면서 미얀마 쿠데타 사안에 대해 연대해왔다. 그러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고, 한국산 선박을 군부가 활용하고, 최근에는 국산 무기 수출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하여 쿠데타 세력인 군부를 무기 수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비

판에 직면하면서 연대의 진정성이 흐려지기도 했다. 방위산업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방산물자가 갖고 있는 특성상 수출량과 대상지역을 확대할 때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방산물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 관련 법제는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K-방산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출국으로서 한국이 가져야 할 인권책무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K-방산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함께 조금씩 진행되었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국과 아세안의 방위산업 연구는 주로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략에 대한 경제적·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의 제도와 기구를 활용하는 제도적 협력방안(이숙연 2020; 이재현 2024), 국가별 SWOT을 통한 현지화 전략(윤범식 2024),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전망(최인아·장한별 2023)에 대한 연구들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닌 포괄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방위산업 및 치안산업 분야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학술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군사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1편 뿐이며(안재환 2018),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방위산업 관련 연구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방위산업 현황을 다룬 네 편(최현호 2019a, 2019b, 2020a, 2020b)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인권책무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국제법 준수 의무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심사 절차 강화, 사후 검증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하는 연구 한 편에 불과하다(조장현 2025). 인권 실사 의무화나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논의 등은 학계에서보다 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 무기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치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함 및 무기 수출 사례로 논란이 된 미얀마는 방산물자의 사례로, 태국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치안물품의 사례로서 다루고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방산물자 및 치안물품 관련 법제 및 수출대상국의 법제 검토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위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책무성 강화 방안을 법제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먼저, 본격적인 사례 연구로서 미얀마 군함 수출건과 무기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및 현지 법제를 검토한다. 군함과 무기는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다루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의 법제를 분석하고, 전략물자 수입과 관련한 미얀마 현지 법제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제 개선 및 조치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 태국의 살수차 수출건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및 현지 법제를 검토한다. 태국 시위 현장에서 논란이 된 사건은 태국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차량을 이용해 최루액과 푸른색 페인트를 섞어 시위대에 분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살수차는 단순한 ‘이중의 용도’를 갖고 있는 품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 살수차가 뿜어내는 물의 수압으로 인해 시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살수차에 최루

액이나 최루가스과 같은 유독물질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민간인에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살수차가 인권을 침해하고, 비평화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태국으로의 치안물품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살수차는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면서 이중용도품목<sup>3)</sup>으로도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관련 총칙, 이중용도지정품목 법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황허가 제도, 수출요령 관련 법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인권책무성과 방산물자 수출

인권책무성(Human Rights Accountability)은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책임, 답변가능성, 집행가능성/제재라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OHCHR 2015).

첫 번째 구성요소인 책임(responsibility)은 각 행위자의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기 수출 통제의 맥락에서 책임은 국가가 불허해야 하는 수출의 기준과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사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의 차원에서 책무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실제로 수출과 관련한

3) 민간 및 상업용으로 생산되었으나 비평화적,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용도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분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즉, 정부가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할지 거부할지, 기업이 특정 국가로 특정 물자의 수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책무성은 재량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체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OHCHR 2015).

두 번째 구성요소인 답변가능성(answerability)은 권한을 가진 행위자가 그 영향을 받은 대상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의미한다(Bovens 2007). 인권 침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변가능성은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으로, 답변가능성의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질적인 제재와 구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에 기여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가 가능하면 이후 유사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억지 효과가 발휘되고, 구제 조치가 구축됨으로써 피해를 일부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은 책무성의 보장과 실현을 의미한다(OHCHR 2015).

책무성의 이 세 가지 핵심요소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가,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의 관계로 구성된다(Mulgan 2000).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미얀마와 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치안물품 수출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에 노출된

수출대상국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책무성은 사후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책무성의 핵심요소와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미얀마와 태국 사례에 대해 예방 조치, 모니터링, 제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기업과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과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이하 ATT)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범을 근거로 하고, 이러한 국제규범 및 국제조약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법제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인 미얀마 군함 수출과 태국 살수차 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UNGPs의 핵심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UNGPs의 네 번째 원칙은 국가가 인권 침해를 방지 위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 인권 실사를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는 방산물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인권 실사 의무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원칙은 분쟁 지역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음에도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협력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의 공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국가의 정책, 법률, 규정 등의 조치가 기업의 중대한 인권 침해 개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미얀마 쿠데타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17~19번째 원칙은 기업에 대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으로 인권실사를 제안한다. 이는 기업이 인권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그리고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번째 원칙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계로 인해 자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

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directly linked) 부정적인 영향까지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OHCHR 2011), 이는 수출한 선박이 분쟁 상황에서 군부에 의해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수출한 살수차가 시민을 향해 직사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UNGPs가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면, ATT는 무기 거래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을 제공한다. ATT 제6조는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무기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또한 ATT 제7조는 무기 수출 허가 시에 국제인도법 혹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자행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인권사항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제4항에서는 해당 부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범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수출 승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UN 2013).

ATT의 이러한 조항들은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넘어,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지’, ‘조장’, ‘명백한 위협’ 등과 같은 용어들이 조약 본문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제규범과 조약의 내용을 각 당사국이 법과 정책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국제인권의무를 국내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사례로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 정치적 상황, 외교적 맥락,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경제발전, 기술혁신이라는 다층적 국익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인권보호라는 규범

적 가치와 국가의 정당한 경제·안보 이익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즉 방위산업의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역규제는 20세기 이후 국가간 무역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큰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생각되었으며(박지연 2017, 85), 완전한 금수 조치, 특정 물품의 수출입 금지, 관세 특혜 박탈 등의 형태를 띤다. 주로 이러한 형태의 적극적인 무역 규제는 수입보다는 수출 분야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무역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수출입의 제한으로 인해 유입이 감소한 물품에 대하여 조치 대상국의 권위주의적 정부가 물품의 분배권을 독점하는 것을 통해 권력을 확장하는 경우, 제재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생활 관련 물품의 부족은 빈곤을 더욱 악화시켜 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정 국가 전체나 모든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무역규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태에 기여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피제재 대상으로 하는 조치와 그 조치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는 경제적 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투자 제한 조치 및 투자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상위 개념인 경제제재에 대한 개념적 논의 역시, 1) 대상국의 외교적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국의 경제관계 철회에 대한 위협 혹은 경제관계를 철회하는 것, 2) 피제재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해당 국가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 3) 국가나 국제기구가 국제법 혹은 국제의무 위반 국가에 대해 행하는 징벌적인 성격의 경제적 강제조치, 4) 정책 변화 및 정책에 대

한 의사 표시를 위해 채택하는 수출입통제, 수출관련 금융 지원 금지, 자금거래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반대 등의 제재(박지연 2015, 57-83; 최철영 2001; 도경옥·백상미 2018)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념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도 무역 및 금융 관련 조치가 경제적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투자 제한은 수출입의 측면에서 무역 관련 조치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금융관련 조치 모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는 국가, 현지 기업, 현지 개입, 또는 자국 기업 및 자국 개인의 현지에 대한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조치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조치는 그 시행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네 가지의 분류(아스카리[Askari] 등의 경제제재 유형 분류, 김희준 2019, 29-62)로 구분되기도 한다.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대상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여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치는 목적성 경제제재(purposeful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불만족을 공공연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는 경고성 경제제재(pallia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대상국에 경제적 손해를 주기 위한 조치는 징벌적 경제제재(punitive economic sanctions),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무역단체 등의 제한적인 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가령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되는 것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성 경제제재(partisan economic sanctions)로 구분된다.

경제적 조치는 비교적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경제 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불평등 심화 등 피해국에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조치로 인해 대상국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에 조

치를 가하는 선별적 조치 및 제재(스마트 제재, Smart sanc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정 물품에 대해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선별적 조치의 종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대상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친화적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해당 정책들이 방위산업 경쟁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권책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만 조건을 부과할 경우 시장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우려될 수 있다. 또한 법제 개정 및 인권 실사 프로세스 도입, 부처 개편 등에 따른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비용이 기업의 수입성에 단기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된다(Alwishewa 2024b).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이며, 인권친화적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효과가 담보된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시되기도 한다(Alwishewa 2024a). UNGPs를 비롯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획득하며, 브랜드 신뢰도와 평판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 접근에 기여한다(Salman 2025). 또한 기업과 수출당사국이 수출품목에 대한 인권책무성 고려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에 따른 평판, 규제,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ABA Center for Human Rights 2022). 특히 인권친화적 수출통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기준 도입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대상국 혹은 대상국 내 인권침해 관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조치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의 조치로서 기

업의 수출입 관련 조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의 조치는 상기한 아스카리의 목적별 경제 조치 분류 중 ‘경고성 경제제재’에 가까운 유형의 경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적 수출통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리나라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 혹은 행위자에 대해 ‘경고성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통해 인권책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Ⅲ. 미얀마 군함과 태국 살수차 사례

#### 1. 미얀마 군함 수출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지속된 이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구매 대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출허가 과정 검토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 과정에서 인권책무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방위사업청의 입장 자료(2021)를 통해 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례의 개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7년 2월 대선조선이 “품명: 상륙지원함, 사용용도: 군수지원선,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을 내용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방위사업청이 수출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같은 해 7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품명: 다목적지원선, 사용용도: 재해발생시 대민지원용,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해 수출허가를 받았다. 여기에서 시민사회가 주목

한 문제는 대선조선이 수출허가를 요청한 선박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허가를 요청한 선박이 동일한 것이었고, 미얀마 해군이 “재해 발생시 대민지원용”으로 수출한 선박을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군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 목적을 대민지원용으로 적시하는 “꼼수”를 통해 수출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엠비씨 2021/04/13). 이에 대해 선박의 수출 허가기관이었던 방위사업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수출 허가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1〉 방위사업법 수출허가 관련 첨부서류 중 〈최종사용증명서〉의 6번 항목

---

6. STATEMENT OF END USER

---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

1. will use it only for the purpose described above, and will not use it or its derivatives for the development or manufactur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or missiles.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If it should be reexported inevitably, we will get the prior acceptance from the exporter.
-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과정은 “수출허가 신청 → 방위사업청의 서류검토 → 국방부 및 외교부 등의 유관기관 검토 →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판단”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 이후 단계별 근거가 되는 법제는 「방위사업법」이다(부록 1 참고). ‘서류검토’에 해당하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 목록 중에는 최종사용자증명서(별지 제19호의 2)가 존재한다. 즉, 수출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최종사용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최종사용증명서>의 6번 항목은 ‘Statement of end user’(최종사용자의 선언)로, 선언의 내용에는 적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군함 수출건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민지원용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았음에도 미얀마 군부가 이를 목적 외로 전용했다는 점이었다. 목적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아니며, 허가기관의 수출허가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최종사용자 당사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우리 기업에서 수출한 물품이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묻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상적인 수출 허가 과정을 밟았다던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그리고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선박의 승무원이었던 미얀 민 투(Myat Min Thu) 전 하사관이 상륙지원함이 명백한 군사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한국 경찰에 제출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목적지원선박이라며 제출한 설계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2022/10/20).

포스코인터내셔널 군함 수출 사례는 특히 군용물자를 포함하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도 수입국의 군 관련 기관에 수출하는 경우에 목적 외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와 목적 외 전용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최종사용증명서>는 수출허가절차 중 최종사용자가 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인권 침해 행위의

4)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수출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①항)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의1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생략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방산업체가 아니며, 미얀마는 ‘가의1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허가 신청 당시 최종사용자인 미얀마 군부의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수출 허가 과정에서 제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체가 되는 당사자와의 무역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UNGPs에 따라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한 것으로 구분되며, 더욱이 군용물자의 경우는 인권침해를 위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직접적 연루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기여 및 연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다루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에서 목적 외 전용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후속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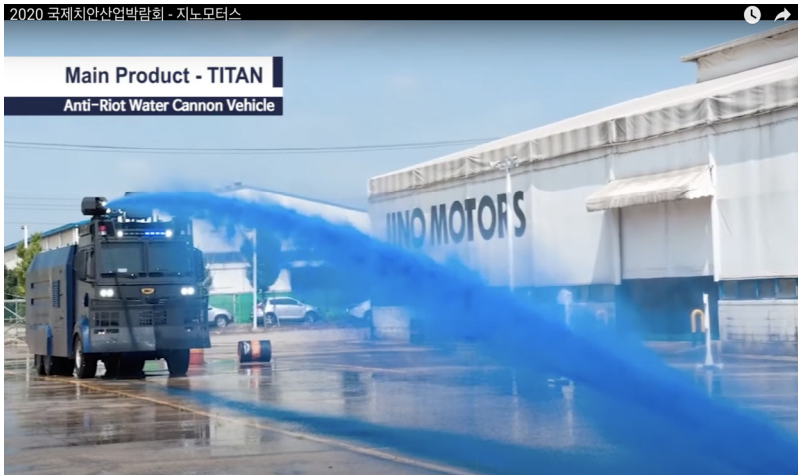
## 2. 태국 살수차 수출

2021년 3월, 태국의 군부정권 및 왕실에 대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살수차가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태국의 민주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재개된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가 등장했다(Strangio 2021). 태국 시위 현장에서 논란이 된 사건은 태국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차량을 이용해 최루액과 푸른색 페인트를 섞어 시위대에 분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시위대 일부는 물대포에 맞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살수차로 뿌린 최루액에 노출된 눈과 피부에 통증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왕실모독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한국으로 망명한 차노끄난 루암삼(27)은 “한국은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치안물자를 수출해 다른 나라의 독재와 폭력을 돕는 것은 끔찍한 모순”이라며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치안물자 수출산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살수차에 대해서

는 경찰청이 관여하는 바가 없어 수출내역이나 수출 이후 사용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이재호 2020).

태국에 살수차를 수출한 한국 기업은 지노모터스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태국 왕실 경찰 본부에 살수차를 수출했다. 지노모터스는 살수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이자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등과 같은 분쟁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살수차 차량을 수출해 왔다. 지노모터스는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구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24년 국제치안산업대전은 20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32개국에서 76명의 해외 경찰 및 해외 바이어가 참석하여 400여 건이 넘는 수출 및 계약 상담이 이루어질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치안물품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지노모터스의 살수차 홍보 내용



출처: 국제치안산업대전 KPEX 유튜브(2020).

문제는 지노모터스가 이 국제치안산업대전의 공식 기업소개 영상에서 “필요시 실제 상황에 따라 소방용 거품이나 최루가스, 염료 등의 첨가물을 물과 함께 분사할 수 있어 시위 진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업이 최루액 사용을 홍보하고 시연하는 영상이 업로드된 것은 앞서 민간업체가 수출하는 살수차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과 모순된다. 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인권 침해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통 민간 및 상업용으로 생산되었으나 비평화적,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가리켜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이라 한다. 그러나 다중 용도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여 이중용도품목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핵,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와 연관이 있거나, 인권 침해 및 탄압 용도로 사용되는 감시 정보 등 의사소통 및 정보 통제와 연관된 품목을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Collusi 2016). 유럽연합의 경우 1994년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규칙 3381/41”을 채택하였고, 이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일된 수출 통제 체제로서 강제력이 있다(이성동 2009). 이 규칙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을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포함하고 민간 및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을 말하며,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거나 비폭발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상품”(이성동 2009, 366)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에 따라 관리 및 통제되고 있으며, 이중용도품목의 목록 역시 해당 고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중용도 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스트레

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을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할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장 제1절 제50조 제1항을 통해 그러한 품목들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정된 지역(가의 2 지역[일본] 또는 나 지역[북한 등 포함])에 수출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살수차는 기본적으로 대량파괴무기 관련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이 고시하고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이나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살수차가 전략물자의 성격을 가지는 이중용도품목으로 판정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살수차를 이중용도품목 체계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현재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이중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므로, 살수차와 같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규제를 위해서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체제가 아닌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 IV.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 관련 법제 개선

전략물자의 수출 신청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

에 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개별수출허가’라고 하는데, 개별수출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및 고려사항에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목적이 전용되어 사용될 가능성과 더불어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 그리고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록 2 참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①항은 수입목적확인서,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출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서류는 모두 수출된 물품이 수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과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목적확인서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종사용자서약서>는 앞서 방위사업법 허가 절차에서도 다루었던 <최종사용증명서>와 동일하며, <수출자 서약서>에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출 대상인 최종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도 수출을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포함으로써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3> <수출자서약서>, <최종사용자서약서>의 목적 외 전용 관련 내용

수출자서약서															
<p>⑦ 사 용 목 적 : Shaping or machining metal or rigid material for vehicle engine</p> <p>2. 최종사용자 확인 방법(√체크 및 상세내역 기재, 근거 자료 별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부발행 공식 문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 등록증</p> <p><input type="checkbox"/> 기타 방법 :</p> <p>3. 서약 내용</p> <p>당사는 본 건을 수출함에 있어 상기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도 수출을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li> <li>2. 최종사용자로부터 재판이나 제수출 또는 국외로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17 . 10 . 25</p> <p style="text-align: right;">서약자(수출자)      홍길동      </p>															
최종사용자서약서(최종사용자증명서)															
<p>⑤ PURCHASE CONTRAC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font-size: small;">ITEM (Including Software &amp; Technology)</td> <td>Horizontal Machining Center Model Name: UN320DD</td> </tr> <tr> <td>QUANTITY</td> <td>1 Unit</td> </tr> <tr> <td>PURPOSE OF USE</td> <td>Shaping or machining metal or rigid material for vehicle engine</td> </tr> <tr> <td>PLACE OF STORAGE (Specifically with address)</td> <td>Hi-Tech Industrial Zone #3, Qingdao, Shandong, China</td> </tr> </table> <p>⑥ STATEMENT OF END USER</p> <p>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ill use it only for the purpose described above, and will not use it or its derivatives for the development or manufactur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or missiles.</li> <li>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If it should be resold or reexported with appropriate reasons, we will get the prior approval from the exporter.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exporter's government written permission is provided.)</li> </ol> <p>⑦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 font-size: small;">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td> <td style="width: 30%; font-size: small;">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td> <td style="width: 30%; font-size: small;">DATE(mm dd, yyyy)</td> </tr> <tr> <td>Li Wan-Xiang</td> <td>President</td> <td>Oct23, 2017</td> </tr> </table>		ITEM (Including Software & Technology)	Horizontal Machining Center Model Name: UN320DD	QUANTITY	1 Unit	PURPOSE OF USE	Shaping or machining metal or rigid material for vehicle engine	PLACE OF STORAGE (Specifically with address)	Hi-Tech Industrial Zone #3, Qingdao, Shandong, China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DATE(mm dd, yyyy)	Li Wan-Xiang	President	Oct23, 2017
ITEM (Including Software & Technology)	Horizontal Machining Center Model Name: UN320DD														
QUANTITY	1 Unit														
PURPOSE OF USE	Shaping or machining metal or rigid material for vehicle engine														
PLACE OF STORAGE (Specifically with address)	Hi-Tech Industrial Zone #3, Qingdao, Shandong, China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DATE(mm dd, yyyy)													
Li Wan-Xiang	President	Oct23, 2017													

출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수출자 서약서 샘플” 및 “최종사용자 서약서 샘플.”

더불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는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가지는 외교적 민감성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용도의 신뢰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제④항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규범과 인권침해와 연관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상황 및 사항들을 수출허가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①항.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 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④항.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
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그러나 이 고시의 내용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군함 수출건의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해”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한 선박은 군사목적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제②항에 “최종 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 해군에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는 그 허가기관이 방위사업청이고, 수출절차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아닌, 상위법인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방위사업법에 적시된 수출 허가 절차에는 목적 외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허가 신청 서류가 <최종사용증명서> 한 종류만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인권 침해 관련 사항들을 수출 허가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부재하다. 방위사업청이 허가하는 물품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군용물자이거나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의 군 관련 기관을 최종사용자로 하는 수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전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Ⅱ: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 “방산 수출 허가와 무기거래조약”을 이슈로 다루면서 미얀마 군함 수출건을 언급하고, 수출 허가 판단 단계에서 국제조약의 저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168).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미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충분히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그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 검토 및 수출 허가 판단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권 관련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시의 내용들을 상위법인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③항, 방위

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첨부서류 강화 등)에 반영하여 적용시키면 허가 및 심사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전용 및 물품 수출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 2. 사후 대책 마련: 제도화와 일시적 우려거래대상자 지정

현행법상 수입의 최종사용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분히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등)제①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무허가 수출 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 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목적을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적법한’ 수출이었음에도, 수출 이후 최종사용자에 의해 목적 외 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수출 예비승인 이후의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나 수출 이후 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168).

포스코인터내셔널 군함 수출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방위사업청이 입장자료를 통해 발표한 ‘약속’의 내용들, 즉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제한 국가 지정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를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제6조 “군용전략 수출통제 실

무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제개정 방안도 있겠으나, 목적 외 전용의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다루는 군용물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수출 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제도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수출자 서약서>에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도 수출을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출 중단’과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절차에 대한 내용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대책으로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 관련 개념 및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우려거래대상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우려거래대상자 목록을 검색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비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자는 UN 안보리 결의를 적용하여 이란, 알카에다, ISIL, 탈레반, 북한으로 지정되어 있다. 목적 외 전용을 할 이력이 있는 최종사용자를 일시적 우려거래 대상자로 등록하여 수출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관련 물품 수출시 신청 업체와 허가 기관이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사전적 조치로도 가능할 수 있다.

### 3.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총칙 법제 개선

살수차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입 품목과 관련한 조치는 수출입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출입 거래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제①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할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밖에 통상·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1호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국제법규에 인권규범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과 연관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이루어내는 근거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앞서 다뤘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제④항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 촉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품목 허가 및 제한을 위한 법제에도 포함하여 명시한다면 인권 침해 용도로 사용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 당사자와 허가기관의 인도적 책임에 대한 고려 증진을 가능케 할 것이다.

#### 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무역안보심사과’가 수출입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략물자 수출허가심사만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황허가를 요하는 품목도 아닌 경우는 수출시 보통 자가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가판정은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 적시되어있는 ‘통제기준’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를 수출자가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기술적인 판단만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자가판정 절차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인권 침해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및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의 이중용도사용 품목 외에도 살수차와 같이 치안품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차원의 심의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제14조(무역투자실) 항목 중 ‘무역안보과장 분장 사항’에 전략물자 이외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심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무역안보심사과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심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방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때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에 명백히 사용되어 이의제기나 진정이 이루어졌던 물품의 경우는 심

의위원회를 통한 상황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판단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정책과로 이전하여 수출입공고 제5조(수출제한품목)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수출요령’에 “관련 물품 계약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물품이 전용될 경우 계약 및 기술협력 중단 조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하거나, 그러한 단서의 내용이 포함된 <수출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보강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 분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나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ODA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함께 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법제처 2023/12/26). 법제처가 법제교류협력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실시한 정례협의회の内容을 살펴보면, “기본법 소개”,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 “규제 법제 정비”, “입법 우수사례 공유” 등과 같이 시스템 개선 이외에도 법제를 정비하고 검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중물품용도 품목의 사용 등의 관련 현지 법제를 개선하는 데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의 공공집회법(2015)에는 시위자의 의무를 적시한 16조를 통해 시위대가 현장에서 무기류를 소지 혹은 사용하거나, 집회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제16조 3, 6항), 공공집회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의 의무 중 하나로 ‘집합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편의를 제공한다’와 같이 평화적 공공집회를 위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제19조).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 시위진압을 위한 도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의무를 적시한 제19조 5항에서 “필요에 따라 군중 제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적시했기 때문에 군중 제어 도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다(한국법령정보연구원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살수차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섞은 액체를 살수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해 농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경찰의 직사살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현재까지 경찰은 집회 및 시위 진압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0조5항(살수차의 사용)을 신설하여 최루액과 같은 혼합성분 사용 금지, 직사살수 금지, 시위 해산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살수차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23/06/01).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태국의 공공집회법 등에 대한 법제 제도 개선을 활용하여 시위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활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태국과 달리, 미얀마는 여러 측면에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쿠데타 이후로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사회 전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시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군부는 더욱더 직접적인 폭력과 제압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집회법을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Human Rights Watch 2021/03/02) 집회에 관한 법률 협력은 가능성이 전무한 대안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용물자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건에 대해서 미얀마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미얀마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미얀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비인도적 방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자에 대한 수출 심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방산물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보·경제·외교적 이익의 정당성, 기업 차원의 수익성 추구의 합리성,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 차원의 인권보호 요구의 규범성을 모두 고려하는 점진적인 법제 개선과 협력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먼저,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미얀마 군함 수출과 태국 살수차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방산물자 수출 법제도는 목적 외 전용이나 인권침해 용도로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 간 심사 기준의 차이, 수출 후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그리고 인권침해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였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 절차에 인권 관련 심사 기준을 반영하고, 이를 수출허가 판단 시 의무적

으로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확대하여 목적 외 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1조의 인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살수차와 같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혹은 조건부 수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학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사후 대응 체계의 구축으로,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최종사용자를 ‘일시적 우려거래대상자’로 지정하여 추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기술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ODA 연계를 통한 협력적 접근도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수입국의 집회법 및 시위 진압 관련 법제 개선, 치안물자 사용에 대한 인권친화적 가이드라인 개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법제 분야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립적 이미지와 기술 이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개별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방위산업협력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이재현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한국이 수출한 방산물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아세안

의 가치와도 충돌하는 것이 된다. 본 연구는 K-방산의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잠재력이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안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의 법제개선에 주로 집중하여, 태국의 사례를 통해 제기한 법제분야 ODA 사업과 같은 동남아시아 현지와의 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제안한 법제 개선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와 제재는 K-방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책무성과 산업경쟁력 간의 균형을 찾는 방향에 대한 추가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학계를 비롯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K-방산을 위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투 고 일: 2025. 07. 16

심사완료일: 2025. 07. 16

게재확정일: 2025. 07. 16

## 참고문헌

- 국제치안산업대전\_KPEX. 2020.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지노모터스.”  
Yout ube. <https://www.youtube.com/watch?v=j5KXhBlqxUA> (검  
색일: 2025.06.05.).
- 김주영. 2021. “#MilkTeaAlliance: 온라인 반권위주의 동맹의 합의와 국제  
연대의 가능성.” 『아세아연구』 64(3): 161-195.
- 김홍구·이미지. 2021.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  
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31(1): 81-112.
- 김희준. 2019. “국제사회 제재와 제재국에 대한 고찰.” 『무역경영연구』  
17: 29-62.
- 나현필. 2021.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입은 군복, 한국 기업이 만든다.” 『프  
레시안』 (6월 9일).
- 남명렬·강석중. 2021. “한국형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시 방산협력국  
가 수요확산 예측.”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5(9): 1234-1243.
- 도경욱·백상미. 2018.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2022. “미얀마 군부  
에 군함을 수출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해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10월 20일).
- 박지연. 2015. “경제제재 대상국 의사결정 요인의 통계적 분석.” 『국방연  
구』 58(3): 57-83.
- \_\_\_\_\_. 2017.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합의.” 『국가안보와 전략』 17(4): 83-113. p. 85.
- 방위사업청. 2021. “모 대체(4.13)의 군함을 용도만 슬쩍 포스코 품수 수출  
보도 관련 입장자료.” (4월 15일).
- 법제처. 2023. “법제 분야 ODA로 아시아와 상생 발전한다.” 보도자료 (12  
월 26일).
- 아세안 AIF. 2023. “아세안, 대한민국의 주요 무기 수출 시장으로 떠올라.”

(3월 10일).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43901&mid=a301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0000&currentPage=1&pageCnt=10](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43901&mid=a301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0000&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 2025.05.28).

- 안재환. 2018. “한-아세안 군사협력 현황과 과제: 방위산업 수출과 군사공적개발 원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엠비씨. 2021. “군함을 용도만 슬쩍 … 포스코 ‘꼼수’ 수출?” (4월 13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5\\_34936.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5_34936.html) (검색일: 2023.06.14).
- 오마이뉴스. 2023. “경찰의 ‘살수차 부활’ 시도에 ‘살수차 제한법’ 내놓은 박주민.” (6월 1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63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63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 2023.06.14).
- 윤범식. 2024. “동남아시아 방산수출 전략 연구: SWOT 분석을 통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6): 435-441.
- 이성동. 2009. “유럽연합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회』 11(3): 359-391.
- 이숙연. 2020.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진전과 군사협력 발전.” 『국제정치연구』 23(4): 229-257.
- 이재현. 2024. “한국의 대 아세안 국방협력,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ADMM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3월 8일).
- 이재호. 2020.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되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한겨레』 (10월 2일). <https://www.hani.co.kr/arti>

- /society/society\_general/966740.html (검색일: 2023.05.14).
- 이제훈. 2022. “미얀마 쿠데타 1년 맞아… 한국 등 ‘폭력 멈추고 대화 개시해야’ 공동성명.” (2월 1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29388.html> (검색일: 2023.05.14).
- 이태주. 2000. “국제개발 전문가 양성과 인류학적 지역연구의 활용.” 실천인류학연구회.
- 전광준. 2021. “미얀마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됐다? ‘DK-44’의 정체.” 『한겨레』 (3월 12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6583.html#csidxbf2e854f74b16f7adcaac87604162e8](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6583.html#csidxbf2e854f74b16f7adcaac87604162e8) (검색일: 2023.05.14).
- 조장현. 2025.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기 수출의 법적 책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최인아·장한별. 2023.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KIEP 대외경제 포커스』 6(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철영. 2001.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현호. 2019a.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남아 국가들-태국: 다련장로켓, 장갑차량, 소형 무인기 및 해군 함정 중심으로 국산화.” 『국방과 기술』 490: 46-57.
- \_\_\_\_\_. 2019b.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남아 국가들-인도네시아: 중요 장비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에 집중.” 『국방과 기술』 491: 44-57.
- \_\_\_\_\_. 2020a.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남아 국가들-말레이시아: 해외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생산이 주력인 빈약한 기반.” 『국방과 기술』 492: 28-39.
- \_\_\_\_\_. 2020b.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남아 국가들-싱가포르: 자국 수요 충족을 넘어 해외 사업 참여까지.” 『국방과 기술』 493: 72-85.
- 한국법령정보연구원. 2015. “태국 2015년 공공집회법 원문본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ការងារអន្តរជាតិ, ២០២៤.”

현시내. 2021. “미얀마-태국 ‘쌍둥이 독재자’에 맞서는 밀레니얼 연대.” 『한겨레』 (2월 27일).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984739.html> (검색일: 2023.05.14).

홍문숙. 2021. “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동남아시아연구』 31(1): 113-153.

ABA Center for Human Rights. 2022. “Defense Indust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Guidanc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Human Rights.

Alwishewa, Hiruni. 2024a. “Responsibilities to Prevent: Responsibilities of Supply-Side Actors to Prevent th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Arms Exports to Conflict Zones.” Ph. D. Dissertation.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_\_\_\_\_. 2024b.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Arms Companies: Lessons from Supply Chain Regulatio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2024: 1-17.

Bergquist, Amy, Theresa Dykoschak, Michele Garnett McKenzie, Rosalyn Park, Robin Philips and Jennifer Prestholdt. 2015. “Accountability.” *Human Rights Tools for a Changing World: A step-by-step guide to human rights fact-finding, documentation, and advocacy*.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pp. 145-197.

Defense News Army. 2024. “South Korea remains among Top 10 global defense exporters.” Feb. 12. <https://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2024/south-korea-remains-mong-top-10-global-defense-exporters> (검색일: 2025.03.22.).

George, Mathew, Katarina Djokic, Zain Hussain, Pieter D. Wezeman and Siemon T. Wezeman. 2025.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 Transfer, 2024.” *SIPRI Fact Sheet*. SIPRI.
- Human Rights Watch. 2021. “Myanmar: Post-Coup Legal Changes Erode Human Rights.” March 2. <https://www.hrw.org/news/2021/03/02/myanmar-post-coup-legal-changes-erode-human-rights> (검색일: 2025.06.05).
- OHCHR.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ited Nations.
- OHCHR. 2015. “Who will be Accountable?: Human Right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Park, Wooyeal. 2024.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Goes Global, and Local Too: An Econo-Tech Approach.” ISPI. <https://www.ispionline.it/en/publication/south-korean-defense-industry-goes-global-and-local-too-an-econo-tech-approach-169127> (검색일: 2025.03.22).
- Salman, Yaron. 2025. “Light unto the Nations Through Arms Sales: Israel’s Arms Diplomacy Goal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Contemporary Review of the Middle East* 12(2): 209-229.
- SIPRI. 2021. “Military Expenditure by Region in Constant US Dollar.”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검색일: 2023.05.14).
- Strangio, Sebastian. 2021. “Thai Police Forcefully Disperse Protesters Demanding PM’s Resignation.” *The Diplomat*. July 19.
- UN. 2013. “The Arms Trade Treaty.” United Nations.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milex.sipri.org/sipri>

Abstract

---

## ‘K-weapons’ and human rights accountability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cases of Myanmar and Thailand

Kim, Hyun Kyou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o strengthen human rights accountability for South Korean exports that risk being misused to suppress democracy or violate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Using a case study approach, it analyzes the export of military ships to Myanmar’s defense sector and dual-use security goods (water cannons) to Thailand to identify critical vulnerabilities in the current export control system.

The Myanmar case highlights the critical need for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version of strategic goods to military-affiliated end-users. To address thi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legal and procedural reforms. A key recommendation is to incorporate human rights provisions from the ‘Strategic Goods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into the ‘Defense Industry Act’ to fortify the licensing and review process. Furthermore, it calls for enhanced institutional oversight, including continuous end-user monitoring and utilizing a ‘Denial List’ to manage high-risk entities.

The analysis of water cannon exports to Thailand reveals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dual-use items with potential for human rights abuse. The study suggests amending the ‘Foreign Trade Act’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uch items and empower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review bodies. Moreover, this paper advocates for a cooperative approach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support partner countries in enhancing their legal systems regarding public assembly,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guidelines for security equipment,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ltimately, this research outlines an essential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South Korea’s trad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conducted in a human rights-friendly manner.

**Keywords:** K-Defense, Myanmar, Thailand, defense industry, dual use item, accountability

부록 1.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과정과 법제의 세부 내용

단계	법제	세부내용
서류 검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③항	<p>“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li> <li>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li> <li>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li> <li>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li> <li>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li> <li>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li> <li>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li> </ol>
유관 기관 검토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제④항	<p>“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수출 허가 판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제⑥항	<p>“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li> <li>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li> <li>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단계	법제	세부내용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부록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3. 삭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1부.
  8.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